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생산의무대상 회의록 미생산

기 관 명 부산광역시, 북구

내 용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,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고,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생산의무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, 개최기관, 일시 및 장소,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, 진행순서, 상정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(○○○○○실)에서는 ‘○○○심의위원회’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, 2014. 10. 13.부터 2016. 10. 14.까지 ‘○○○심의위원회’를 10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하지

않고 심의의결서 등만을 생산·등록한 사실이 있고, 위 관서(○○○○과)에서는 ‘지방○○○○위원회’가 「토지보상법」 제5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, 2014. 5. 19.부터 2016. 12. 12.까지 ‘지방○○○○위원회’를 23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고 심의의결서 등만을 생산·등록한 사실이 있으며, 위 관서(○○○○과)에서는 ‘○○○○심사위원회’가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, 2014. 5. 20.부터 2015. 5. 22.까지 ‘○○○○심사위원회’를 32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·등록하지 않고 심의의결서 등만을 생산·등록한 사실이 있다.

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(○○○○과)에서는 ‘○○○○○지역지정심의위원회’가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, 2014. 11. 19.부터 2016. 4. 28.까지 ‘○○○○○지역지정심의위원회’를 4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·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, 북구청장은

[주의]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등록·관리하시기 바랍니다.